

신구조문대비표
「건축법 시행령」

건축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8211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	건축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8397호, 2017.10.24., 일부개정]
<p>제10조의3(건축물 안전영향평가)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“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연면적(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)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</p> <p>② ~ ⑧ (생략)</p>	<p>제10조의3(건축물 안전영향평가) ①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</p> <p>가. 연면적(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)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</p> <p>나. 16층 이상일 것</p> <p>②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9조의2(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)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p>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(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19조의2(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) ①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- - - - -</p> <p>- - - - -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</p> <p>가.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</p> <p>나. 농업·임업·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·저장고·작업장·퇴비사·축사·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</p> <p>다.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2조(구조 안전의 확인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층수가 2층(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</p>	<p>제32조(구조 안전의 확인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- - - - 2층[주요구조부인 - - - - -</p>

